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01. 8. 23.  
기획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1년 8월 9일

○ 회부일자 : 2001년 8월 10일

다. 상정일자 : 제19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1. 8. 22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증평출장소장 김 재 욱)

가. 제안이유

- 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 관련법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가 주소 변경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첨부서류를 미 징구하는 등 행정규제 사항을 폐지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어 도시개발법 적용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제2항”을  
⇒ “도시개발법 제11조 제4항”으로 함.
- 주소 등 변경신고 시 첨부서류 미징구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호적등본 1통 등 제출 삭제함.

##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 상 혁)

-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상위법 폐지에 따른 근거조항을 도시개발법으로 정비하고, 주소등 변경시 첨부서류를 미징구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2000. 1. 28일 법률 제6252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2000. 1. 29자로 도시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제2항”을  
“도시개발법 제11조 제4항”으로 개정하고,

주소등 변경신고시 첨부되는 주민등록등본 1통 및 호적등본 1통 제출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2000. 1. 28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1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개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